

울산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8가단58273(본소), 2020가단106342(반소) 판결
[공사대금 · 하자보수금청구]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나17283(본소), 2020나17290(반소)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8가단58273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법조

담당변호사 전은수, 천성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규철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변 론 종 결 2020. 9. 22.

판 결 선 고 2020. 11. 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7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8,460,695원과 그 중 94,390,695원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 중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0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172,045,704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8. 피고와 부산 기장군 C 외 6필지 지상 D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전기 · 소방 ·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억 7,000만 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7. 4.경 홈오토카메라, 에어컨실외기, 환기팬,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계량기 등의 추가설치에 따른 추가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92,500,000원으로 한 추가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5. 16.경 피고에게 공사 타절 통보를 하여 그 무렵 이 사건 하도급 및 추가 하도급계약은 해제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를 중단할 무렵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350,880,000원, 이 사건 추가공사의 기성고는 28,190,000원으로 기성고 합계는 379,070,000원이다.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공사대금 총액은 3억 7,500만 원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중단한 이후 피고는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맡겨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E은 피고에게 원고의 공사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 시공비를 포함한 잔존 공사 견적서를 제출하기 위해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사진을 찍었고, 피고는 위 사진을 이 사건에서 하자보수비를 감정한 감정인 F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가 제출한 위 사진, 하도급계약서, 도면, 물량산출조사서 등에 근거하여 감정인 F이 산정한 원고 시공 부분의 하자 및 하자보수비는 별지 표 하자보수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 F의 각 증언, 감정인 H 및 F의 각 감정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금 379,070,000원에서 기 지급대금 3억 7,500만 원을 공제한 4,0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권을 인정한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이행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무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므로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감정인 F의 감정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 관련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72,045,704원을 구한다.

나. 판단

감정인 F의 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인 F은 별지 표 하자보수비 중 가의 4, 10, 13 부분은 주식회사 E이 찍은 사진이 없어 피고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위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부분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위 가의 4, 10, 13을 제외한 별지 표 하자보수비의 나머지 부분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감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로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변론종결 후 허가도면과 준공도면이 상이하고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감정이 진행되어 감정서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증인으로 출석한 감정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였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허가도면과 준공도면이 다르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98,460,695원[별지 표 하자보수비 총액 172,045,704원 - 별지 표 가의 4, 10, 13 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73,585,009원(61,683,304원 + 4,239,246원 + 7,662,459원)]과 그 중 94,390,695원(98,460,695원 - 4,070,000원,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4,070,000원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피고가 위 공사대금채무를 이행 제공하였다는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4,070,000원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는다)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4. 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정재욱

별지